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71990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배상현

피고, 항소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조대규

피고보조참가인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0. 11. 13.

판결 선고 2020. 12. 1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단512767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6,546,000원 및 그 중 1,319,726,000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8%, 3,336,820,000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554,501,34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02,044,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변론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보증채무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이 2017. 1. 23.경 당초 피고보조참가인의 단독수급 방식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 (이하 'I'이라 한다)의 공동수급 방식으로 형태가 변경되면서 이로써 피고의 계약이행보증 채무 역시 피보증채무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는 민법 제428조의2에서 정한 '보증채무가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당초 약정한 것과 달리 피보증채무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외에 H과 I 이 참가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과 H, I은 공동수급인으로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계약금액 32,347,750,604원에, 통신공사 부분은 H이 계약금액 719,640,235원에, 소방공사 부분은 I 이 계약금액 980,721,183원에 각 부담하여 이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갑 제3호증)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계약이행 의무를 보증금액 3,336,820,000원, 보증기간 2016. 1. 25.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로 H과 I 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있어 피보증채무자 범위(피고보조참가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42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보증채무가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단독수급계약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이 공동수급 형태로 변경하였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밝히지 않아 피고는 이를 몰랐다. 이와 같은 사항은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은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피고는 2020. 10. 16.자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취소를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조합원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것은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이 착오에 빠진 경우 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합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H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외에 H과 I 이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로 H과 I 이 추가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있어 피보증채무자 범위(피고보조참가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가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최종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50조 제6항, 제7항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있어서 종전과 변함이 없고, 전체 공사금액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한공사계약의 금액에 비추어 H이나 I 이 이행하기로 부담한 액수가 크지 않아 주채무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그 사실을 안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H한 조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2019. 10. 25. 원고에게 5,106,366,327원을 지급한 바 있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102,044,657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어 가집행선고가 실효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돈의 일부에 대하여 가지급물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신청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없어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이수진, 판사 박동복